

정희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연구부장

## 자율 환경관리의 활성화 방안<11>

### 목 차

#### 제1장 서론

1. 산업환경규제와 새로운 도전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제2장 현행 산업환경관리제도의 문제점

1. 환경관리 대상업체의 현황과 분포  
2. 산업별 환경오염물질 배출규모와 양태  
3. 현행 산업환경 관리제도  
4. 현행 산업환경관리제도의 한계와 규제 개혁 과제

#### 제3장 자율환경관리의 이론과 과제

1. 자율환경관리의 의의와 특성    2. 자율환경관리의 이론적 평가  
3. 자율환경관리의 유형            4. 자율환경관리의 운영 절차  
5. 자율환경관리의 설계 조건

#### 제4장 산업환경규제개혁과 자율환경관리의 국제동향

1. 일본                                    2. 미국  
3. 유럽연합                            4. 기타  
5. 종합평가

#### 제5장 우리나라 산업의 환경경영과 자율환경관리실태

1. 개별기업의 환경경영촉진제도  
2. 폐기물감량화 및 재활용목표율 제도  
3. 사업자단체의 자율환경관리 조직  
4. 지역기반의 자율환경관리 조직  
5. 에너지 관련 자율환경관리 체계  
6. 평가와 문제점

#### 제6장 자율환경관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1. 자율환경관리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2. 자율환경관리의 추진모형과 추진 방법  
3. 환경경영을 통한 자율환경관리 지원

#### 제7장 결론 및 향후과제

## 제5장 우리나라 산업의 환경경영과 자율환경관리 실태

### 1. 개별기업의 환경경영촉진제도

#### 1.1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 1.1.1. 의의와 법적 근거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한 요건을 갖추고 응모한 기업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친화기업이라고 인정을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프로그램결정형의 성과지향적 자율환경관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기업이 환경규제치 준수에 그치는 기존의 대응 방식을 탈피하여 기업 스스로가 환경성을 평가하고 개선계획을 실행토록 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도입배경은 1992년 6월 리우선언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기존의 규제와 통지(Command & Control)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동 제도는 법적 근거를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2,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두고 있으며 1995년 4월 14일에 환경친화기업운영규정 제정(환경

부 예규)에 의해 도입되었다. 심사기준은 환경관리 일반현황(80점), 환경성평가의 충실성(70점), 분야별 오염관리 현황(100점), 환경개선계획(150점) 등이다. 일반지역의 경우 80%(320점) 이상 획득한 신청기업이,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85%(340점) 이상 획득한 신청기업이 3단계 사정위원회에 최종회부된다. 환경친화기업 지정 후 매 1년 마다 환경개선 이행상황 및 오염물질을 채취·검사하여 지정 계속 여부 결정하는 데 이해사항 평가시 80%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이 연장된다.

### 1.1.2 지정불가 및 취소요건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환경친화기업 지정이 불가하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서 개선명령, 사용금지, 폐쇄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이전명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1)을 받았거나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기업.

-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그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 지정이 취소된 기업으로서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신청당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소송 또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민원이 제기된 기업.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정이 취소된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 제 15조 제1항에 의한 오염물질의 채취·검사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개선명령, 사용금지, 폐쇄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이전명령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거

나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에 의뢰·작성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운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 운영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기업 이행상황 평가결과 80점 미만인 사업장

-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1)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확인과 관련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1.1.3 참여유인제도와 지정상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신고대체, 정가지도·점검의 원칙적 면제, 중소기업 용자의 우선지원, 각종 표창시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1998년 4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총 117개 업체이다. 업종별로는 기타가 36개소로 가장 많으며 전기·전자 28개소, 화학 20개소, 음식료품 14개소, 기계 제강 9개소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V-1〉 환경친화기업 지정상태(1998. 4)

계(개소)	전기·전자	화학	음식료품	기계제강	유리	섬유·제지	기타
117	28	20	14	9	3	7	36

자료 : 환경부 환경경제과 내부자료에서 재정리.

## 1.2 ISO14000인증제도

### 1.2.1 ISO14000인증제도의 의의

ISO14000이란 원료조달에서 부터 제조·유통·판매·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산의 전과정에 걸쳐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자원소모,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규격을 말한다.

ISO 14000규격에 의한 인증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실정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환경관련 규격을 통일하고 기업의 자율적 환경관리를 통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1993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ISO 인증획득의 효과는 ISO의 심사항목 등 내용을 기업의 전 종업원과 사장이 충분히 숙지하여 기업의 경영체제가 개선되고 품질향상과 생산성향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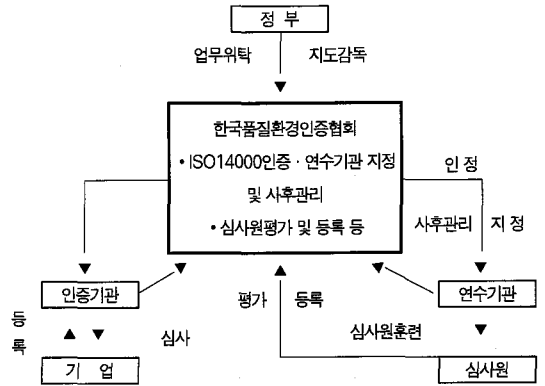
지난 1996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ISO 기술 위원회(TC207)를 통해 ISO 14000의 핵심규격인 환경경영 체제 및 인증심사 절차·방법 등에 관한 규격을 확정하고 1996년 9월 동 규격이 발간, 제정됨으로써 전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1.2.2. 우리나라의 환경경영인증제도 운영체제

우리나라에서의 환경경영(ISO 14000) 인증제도는 1996년 7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1996년 10월 부터 실시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ISO환경경영 및 품질경영 인증제도의 인정기능을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KAB)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증업무는 현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가 5개의 인증기관(한국품질인증센터, 한국능률협회품질인증원,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한국환경품질인증지원센터,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ISO14000인증절차는 인증신청단계, 심사계획단계, 인증심사단계, 시

정조치 및 인증단계 등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그림 V-1〉 우리나라의 ISO14000인증수행 체제

1998년 9월 30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ISO14000」을 획득한 기업은 총 269개 업체이다. 이중 대기업은 전체의 62%인 167개 업체이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의료, 정밀, 광학기기 분야가 53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건설 45개소, 화합물 및 화학제품 37개소, 기계 및 장비 27개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목표율 제도

2001년의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 실천목표는 1996년 7월에 수립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상에 제시되어 있다.

〈표 V-2〉업종별·규모별 「ISO14000」 인증업체 현황(1998. 9)

업종 및 규모	광업	음식료품 및 담배	섬유 및 포피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코르크,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기계 및 장비	비금속 광물제품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품	전기·전자, 의료, 정밀, 광학 기기및시계	선박건조 및 수리	항공우주 산업
업체	1	13	3	12	8	37	8	27	4	9	53	3	3
업종 및 규모	기타수송 장비	가구 및 기타 제조업	재생재료 가공처리	전기, 가스 및 수도공급	건설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	숙박 및 음식점	운수, 창고 및 통신	부동산, 임대	기타사업 및 사회 서비스	대기업	중소기업	총계
업체	13	1	3	3	45	2	5	5	2	9	167	102	269

자료 :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국내 인증범위별 인증획득 현황」, 1998. 9에서 재정리

· 목표설정은 첫째, 폐기물관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활용을 확대하고 매립 및 소각물량을 줄이는 방향. 둘째, 폐기물의 조성, 국내재활용능력 등을 고려한 설정. 셋째, 재활용이 안되는 최종폐기물은 좁은 국토현실을 고려하여 매립 보다는 소각처리에 중점이라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목표를 업계와 협의·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제도에서 업계와 설정한 목표는 법적 의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는 할 수 없으며 목표에 미달하였다고 하여서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자율환경관리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생활)	(재활용)	(소각)	(매립)
1995	23.7%	4.0	72.3%
1998	30.0%	15.0%	55.0%
2001	35.0%	20.0%	45.0%

(사업장)	(재활용)	(소각)	(매립)
1995	61.2%	6.3%	32.5%
1998	65.0	10%	25.0
2001	68.0%	12.0%	20.0

〈그림V-2〉 우리나라의 국가 폐기물관리 실적목표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1997. p.507

## 2.1 재활용 목표율 설정제도 (2)

재활용목표율제도는 종이제조업, 유리용기제조업, 제철 및 제강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등 자원재활용 업종을 대상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재활용 목표율을 설정하고 개별기업은 배분된 목표를 자율적으로 달성

하는 방식이다. 동 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 9조와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1993년 “재활용 지정사업의 재활용 지침”으로 고시되었다.

재활용목표율제도에서는 원료사용에 있어 재활용가능 자원 이용이 필요한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일정 생산규모 이상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자는 폐지, 폐유리, 고철, 폐플라스틱 등의 재활용계획 및 실적을 사업자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매5년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이용목표율을 설정하고 재활용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단체는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제출하는 실적을 총괄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총괄계획을 당해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96년 재활용지정사업자 중 중점관리대상사업자의 폐자원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폐지 54.6%, 폐유리 60.5%, 폐 PET용기를 제외한 기타 폐플라스틱용기 12.4%로서 1996년도 이용목표율(폐지 50%, 폐유리 47%, 기타 폐플라스틱 용기 10%)을 초과 달성하였다. 그러나 폐철캔 27.4%, 폐 PET용기 23.6%로서 1996년 이용목표율(폐철캔 30%, 폐PET용기 23.6%)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 업종별 폐자원 이용목표율〉

재활용가능자원	(단위 : %)			
	적용기간 '95.12.31까지	'96.1.~ '97.12.31	'98.1.1까지	
폐지	47	50	55	
폐유리	42	47	52	
폐철캔	20	30	40	
폐플라스틱	페PET용기	10	25	55
	기타 폐플라	5	10	20
	스틱용기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1998. p.507

사업장 발생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생산·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 재활용이 특히 필요한

2) 환경부, 「환경백서」, 1997·1998년에서 재정리.

3) 철강슬래그 및 석탄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1993.12.10 환경처고시 제93-110호),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1995.11.17환경부고시 제95-126호).

부산물 배출자인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는 지정부산물을 일정비율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sup>3)</sup> 1996년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실적은 철강슬래그 100%, 석탄재 27%, 건설폐재 70%이다. 그리고 페타이어, 폐유 활용 그리고 자동차와 가전제품<sup>4)</sup>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있다.

〈표 V-4〉 지정부산물 재활용 목표율

(단위 : %)			
구분	세구분	'97년	'98년 이후
철강슬래그	고로슬래그	100(100)	100
	제강슬래그	80(95.7)	90
석탄재		25(32.2)	35
건설폐재	토사	30(63.5)	60
	페콘크리트	25(64.6)	50
	페아스콘	10(61.0)	35

주 : ( )는 1997년 재활용 실적임.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1998, p507

## 2.2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제도

1995년 8월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동법규에 의하여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는 1996년 12월 “사업장폐기물감량화지침”을 제정 고시하였다.

사업장폐기물감량화제도는 공정개선,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량화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사업장은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 이상 발생시키는 14개업종의 사업장이며, 1995년말을 기준으로 556개사업장이 대상사업장이다. 대상사업장의 수는 전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의 1%에 불과하지만, 이들 업체가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은 우리나라 전체 지정폐기물 배출량의 86%를 차지한다.

사업장폐기물 감량화대상사업장은 공정분석, 감량요인 분석, 재활용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목표율, 이행수단 등

의 내용을 담은 사업장폐기물감량화계획을 사업장별로 그 특성에 따라 수립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자가폐기물 감량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면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지원한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지침에 따라 산업부문별 사업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감량화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업체별 성과를 평가하여 환경친화기업지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자단체는 사업장별로 감량화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해 3월까지 우수사업장 지정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우수 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도·점검면제,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가점부여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우수사업장 중 업종별로 1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폐기물 최소화평가(WMA)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유사업체에 보급하여 산업장 폐기물 감량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sup>5)</sup>

## 2.3 포장폐기물 감량화제도

유통단계에서의 감량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과대포장규제(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회수), PVC 및 발포스티렌계 포장재 사용제한, 리필제품생산신고, 포장폐기물감량화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제품의 유통을 위해 사용되는 포장재의 소비량은 연간 560만톤으로 추정되며, 이 양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32%에 해당된다.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가능한 한 재이용가능한 포장으로 변경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를 생산하고, 효과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감량화를 도모하고 있다.

4) 제1종 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1993.12.10 환경처고시 제93-108호)

5) 환경부, 「환경백서」, 1998, P488.

1995년 8월에는 가전제품 완충용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목표율을 포함한 「가전제품포장용 합성수지재질완충 재감량화지침」을, 1996년 7월에는 음식료품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목표율을 부여하는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지침」을 고시하였다. 동 지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부여된 킬로그램을 감량하거나 재활용해야 한다.

〈표 V-6〉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

(단위 : %)			
구분	1998.1.1부터	2000.1.1부터	2001.1.1부터
계란난좌/백	50%	60%	60% 식품류, 잡화류, 종합 제품류에 사용되는 힘 성수지 포장재
과일난좌(사과/배)	5%	15%	
컵라면 용기	—	10%	
발침접시류	30%	50%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1998. p.490

〈표 V-5〉 가전제품완충용 합성수지 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

(단위 : %)			
구분	1998.1.1부터	2000.1.1부터	2002.1.1부터
대기업	10%이상	30%이상	50%이상
중소기업	10%이상	20%이상	30%이상

자료 : 환경부, 「환경백서」, 1998. p.490

**2000년 세계 환경의 날 기념**

제2회 연합회장상

**본** 연합회에서는 2000년도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제2회 연합회장상(감사장, 공로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 상 명 : 연합회장상(감사장, 공로상)  
 시상일시 : 세계환경의날 즈음에 (추후통지)  
 시상대상 : 지역협의회 발전에 공이 큰 관계 공무원 및 환경관리인  
 시상인원 : 지역협의회당 2인까지  
 추천마감 : 2000년 5월 10일 오후 6시까지  
 준비서류 : 추천서(공문형식), 해당자 이력서 각 1부

(사)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 마감시간 이후는 접수 불가하며 연락이 없는 협의회는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마감합니다.